

원 안	수 정 안
<u>제 5 조(수당등 지급) (생략)</u>	<u>제 9 조(수당등 지급) (원안 제5조와 같음)</u>
<u>제 6 조(시행규칙)</u>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 다.	<u>제 10 조(운영규정)</u>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4. 9. 9.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5. 1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4. 5. 20.
- 다. 상정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4. 7. 5.) 상정, 질의토론
제2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4. 9. 9.)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만형 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 시행에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증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의 우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증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및 주차요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동위원회의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기하는 데 있으며,
- 상기 각호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이종일 위원) : 자치구 위임 사항이 아닌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 등 3가지를 삭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때문이므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당시 기안자에게 경고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답변(윤병여 시민국장) : 공무원이 겸토를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당시 물가계장이 지금은 상암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질의(정연우 위원) : 기안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 답변(윤병여 시민국장) : 조례안 제정 당시에 검토를 잘못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담당계장 인사조치는 아니지만 구두경고 내지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
----------	-----

제출년월일 : 1994. 5. 13.
제출자 : 마포구청장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시행에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로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중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제2항)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15조

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6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교통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5. 주차요금 6.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 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u>체육시설 사용료</u> <u>“삭 제”</u> <u>“삭 제”</u> 3. <u>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u>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 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p>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4. 9. 9.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8. 2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4. 8. 24.
- 다. 상정일자 : 제2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94. 9.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재복 의약과장)

가. 제안이유

보건소 등록치료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사본을 진료상 필요에 의거 다른 진료기관에
 서 요구할 때와 환자 본인이 건강관리등 필요에 의거 요구한 경우에 방사선필름
 사본을 교부할 수 있게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교부함에 따른 보건소수가
 징수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에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교부 신설(안 제2조제2항 제6호)
- 방사선필름(규격 : 14×14인치)사본 교부수수료 1매당 3,000원 규정 신설(별표 제6호)